

광주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506973(본소), 2022가단506980(반소)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정인기

변 론 종 결 2023. 4. 7.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9,8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6.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위적 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29,530,8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84,731,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광주 북구 C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원고는 위 C 지상의 낡은 건축물 등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21. 1. 11. 원고에게 공급가액을 4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위 견적서의 참조사항에는 ① 석면보고서, 해체, 폐석면 처리비 별도, ② 고재 포함, ③ 용수 제공 등의 사항이 기재되었고, 구체적인 비용 산출내역이 기재된 집계표에는 ‘6. 강설(고철)’ 항목이 ‘-2억 원’으로 표시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21.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를 대금 7억 950만 원(공급가액 : 6억 4,500만 원, 부가가치세 : 6,450만 원), 준공일 2021. 8. 20.(그 후 변경계약을 통해 2021. 12. 31.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다(이하 원래계약과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8조와 제29조는 대금의 지급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28조(대금지급) ① 을(수급인, 피고, 이하 같다)은 갑(도급인, 원고, 이하 같다)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

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인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9조(폐기물의 처리 등) 을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갑은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7,095만 원, 2021. 11. 10. 4억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5억 1,095만 원을 지급함에 따라 1억 9,855만 원(= 7억 950만 원 - 5억 1,095만 원)이 미지급대금으로 남게 되었다. 반면, 피고는 2021년 11월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건축사사무소 D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철거공사에 대한 해체감리를 실시하게 한 후 2021. 11. 25. 위 회사로부터 '해체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해체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건축물 해체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마. 한편,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는 2021년 12월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F와 원고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여하는 G 등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고소내용은 'G, F 등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원래 공사비에 2억 원을 부풀린 금액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되 그와 같이 부풀려진 2억 원을 인사비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2021년 11월경 E로부터 위 2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3. 10. 현재 광주지방법검찰청에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전기요금 7,540,300원, 수도요금 1,353,780원, 폐기물 운반비 6,578,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28조, 제29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전기요금 등 합계 15,472,080원(= 7,540,300원 + 1,353,780원 +

6,57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고철 등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여 얻은 대금(이하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이라 한다)으로 722,608,800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고철매도대금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12,608,800원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위 전기요금 등 및 위 고철매도대금 합계 628,080,880원(= 15,472,080원 + 612,608,800원)에서 원고가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 1억 9,85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29,530,880원(= 628,080,880원 - 1억 9,85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주장처럼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에 추가하기로 하였더라도,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견적서(갑5)1)에 따라 제시한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은 441,691,057원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초과한 5억 1,095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와 같이 초과 수령한 공사대금 및 앞서 본 전기요금 등 합계 15,472,080원을 더한 84,731,020원(= 5억 1,095만 원 - 441,691,057원 + 15,472,080원, 10원 미만 버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기요금 등 대납비용의 청구에 대하여

갑6 내지 8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H)가 2021. 11. 30.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7,540,300원과 284,910원을 각 송금하였고, 같은 해 12. 1. J(위 'I'와 같은 회사로 보인다)에게 1,068,870원, K 유한회사(이하 'K'이라 한다)에게 6,578,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I나 K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철거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거나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는 어디까지나 수급인인 피고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만을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폐기물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그 처리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송금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2021. 11. 25. 건축물 해체감리 완료보고서까지 확보한 상태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송금한 위와 같은 돈은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철거공사와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거나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하기로 한 비용이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 등 대납비용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이 법원의 주식회사 L, IBK 기업은행, M단체, N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등을 토대로 피고가 2021. 8. 16.부터 2022. 10. 2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O 등으로부터 구리나 철 등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이 합계 722,608,800원에 이른다면서 그중 612,608,800원(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철거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거나 그 고철 등의 매도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가 이 사건 견적서(을3)의 참조사항에 '고재(고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여기에 첨부된 집계표 제6항에서 강설(고철) 비용을 '-2억 원'으로 표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철거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의 처리나 그 매도대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되, 그 매도대금을 2억 원으로 산정하여 위 철거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 견적서(을3)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금액 등의 계약조건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철 등의 처리나 매도대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도 위 견적서(을3)의 기재와 같은 내용과 같은 합의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도급계약은 공급가액[6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6,450만 원을 더하면 7억 950만 원)]을 위 견적서에 따른 공급가액인 4억

4,500만 원에 2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추가된 2억 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의 처리나 귀속과 무관하게 원고 측(F, G 등)이 이를 임의로 착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2) . 더욱이 을8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던 기간을 전후하여 다른 업체들(주식회사 P, 유한회사 Q, 주식회사 R, 유한회사 S 등)로부터 수주한 여러 건의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1. 8. 16.부터 2022. 10. 20.까지 구리나 철 등의 결제대금으로 입금 받은 722,608,800원에는 위와 같이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매도대금도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 전부가 이 사건 철거공사에서 발생한 고철의 매도대금 자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이를 업체별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철거공사과정에서 발생한 고철매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거나 그 고철매도대금이 722,608,800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고철매도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 결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전기요금 등 대납비용의 반환 청구는 물론,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이 당초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이 사건 견적서(갑5)에서 산출한 금액인 441,691,057원으로 정해졌음을 전제로 원고가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위 견적서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계약의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그 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을 위 견적서의 금액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위 도급계약에서는 위 철거공사대금을 7억 950만 원(공급가액 : 6억 4,500만 원, 부가가치세 : 6,450만 원)으로 정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견적서에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을 2억

원으로 표시한 것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관련 형사사건의 고소내용 등 참조)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도 위 견적서의 공급가액에 2억 원(인사비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서 위 고철매도대금에 해당하는 2억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가 예비적 청구에서 함께 구하는 전기요금 등 대납비용의 반환 청구 부분도 앞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1년 11월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철거공사대금 가운데 1억 9,855만 원(= 7억 950만 원 - 5억 1,0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9,8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2. 2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주장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 등 대납비용 반환채권 또는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또는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본소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요금 등 대납비용 반환채권 또는 이 사건 고철매도대금 반환채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

공급가액만 약 3,308,943원(= 4억 4,500만 원 - 441,691,057원, 구체적으로는 재료비와 이를 전제로 산정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정도 차이가 있다. 다만, 그 금액 차이가 크지 않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금액(6억 4,500만 원, 공급가액 기준)이 위 을3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견적서에 따른 공급가액도 을3의 견적서의 기재(4억 4,500만 원)를 따르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고철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1억 1,000만 원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E가 원고 측의 F, G 등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했다는 2억 원 중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